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4년 9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9월 12일 포항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9월 13일
- 다. 상정일자
 - O 제31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 -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(2024. 9. 30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-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김상혁 정책기획관 직무대리)

가. 개정이유

○ 제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제안제 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. 주무부서, 실시부서 등 조례 내 사용 용어 정비(안 제3조)
- 제안심사위원회 심의시 실무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반영 명시(안 제9조)
- 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규정(안 제10조)
 - 실무심사위원장 내실화(본부·국·소·원장 → 관련부서 부서장)
 - 민간 전문가의 심사 및 평가 근거 조항 신설
- 부상금의 금액 조정(안 제17조 제1항)
 - 기준단위 변경 : (현행) 이상 ~ 미만 → (변경) 이상 ~ 이하
 - 최대금액 조정 : (현행) 금상 최대 200만원 미만 (변경) 최대 300만원 이하
- 동일·유사 제안의 시상 제외(안 제17조 제4항)
-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

다. 관계법령

- 「행정절차밥」제52조의 2
- O 「지방공무원법」제78조
- O 「국민 제안 규정」제2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율)

-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여 제안제 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관련부서 부서장으로 변경하고, 민간 전문가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하는 것으로,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,
- 실질적인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홍보 및 참여 유도, 포상 등을 통해 내부 공무원 이외에도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사료됨.
- 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- 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